9/29 금속노조 60차 임시대의원대회 스케치 **노조 규약 및 조합비·기금 관련 개정내용 해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정책해설지 ■33호_2025년 9월 30일(화) ■홈페이지 https://ch.kmwu.kr

▲ 금속노조는 9월 29일 6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규정 개정안>과 <조합비·기금 납부·교부·배분·시용 방침 변경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발의안' 안건1번으로 채택 → 가결 지부 임원 연임 제한(3선) 유지키로

■ 지난 9월 17일 중앙위원회는 "지부 임원 재연임(3회)후 연속출마 제한 조항 삭제"를 의결하였습니다. 규모가 작 은 지부와 타임오프 탄압으로 지부 임원 출마가 어려운 상 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현장발의로 "지부 임원 재연임(3회)후 연속출마 제한 조항 삽입"하는 안 건이 1호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현장발의 대의원들은 임원 관료화 방지와 새로운 간부 육성을 위해 연임 제한이 필요하며, 중소지부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발의안은 찬반토론 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중앙위원회 개정 이전대로 지부 임원의 연임은 최대 세 번까지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속노조 대의원 규모 축소인은 부결 위원장 제외 조합 임원, 중집에서 징계 가능

■ 〈안건2-1. 조합 대의원 선출을 위한 지부별 배정 기준 조정(안)〉은 조합 대의원 선출 기준을 기존 지부 조합원수 200명당 1명(단수 적용 101명)에서 400명당 1명으로(단수 적용 301명) 상향하자는 안(조합 대의원 규모 축소)이였으나 찬반토론 끝에 규약개정 의결정족수 2/3를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노조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의원 규모도 확대되어 성원 문제 급급하고, 토론이 부실화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발언에 나선 대의원 동지들은 대의원 수 축소가 오히려 현장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안건2-2. 조합 임원 징계 방안 마련 규약·규정 개정 (안)〉이 통과됨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조합 임원(수석부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의 정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조합 임원은 지부·지회 임원과 다르게 정계조항이 없고, 총회를 통한 탄핵만 가능했습니다. 탄핵을 위한 조합원 전체 총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조합 임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도 처벌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제외한 조합 임원들의 징계는 조합 징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위 원장은 기존과 같이 총회를 통한 탄핵만 가능합니다.

조합비 배분율 지역지부 19%, 지회 52%로 상향 지역지부 무급전임 임원, 조합에서 활동비 지원

■ 〈안건3-1. 조합비와 조합 기금 교부 및 배분 비율 방침 변경(안)〉에 따라 **2026년부터 지역지부와 산하 지회, 기업** 지부의 조합비 교부금 배분율이 상향됩니다. 교부금 배분 율 변경은 2006년 12월 산별완성대대 결정 이후 20년만에 처음입니다.

정년퇴직자가 늘고, 신규채용은 줄면서 사업장단위 조합비부족 상황이 오래되었던 것이 배경입니다. 지부와 지회 교부금을 증액하기 위해 조합 기금(투쟁기금, 신분보장기금 등) 배분 비율을 낮추는(1~2% 하향)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구분		교부금 배분율	
		기존	변경(2026년부)
지역지부	지부	18%	19%
	지회	48%	52%
기업지부		54%	59%

■ 〈안건3-2. 일반회계 잔액 및 기금 정기예금 이자 사용기준 방침 변경(안)〉은 조합에서 지역지부 직선 임원중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원(기존 해고자·개별조합원)에 '무급전임휴직자'를 추가하고, 활동비 지원 금액도 기존 1명당월 300만원(상한 2명 월600만원)을 월 400만원(상한 2명 월8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동안 지역지부 임원이 특정사업장에만 편중되거나, 현장에서 선출되지 않고 해고자나 개별조합원이 반복해서 출마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당장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돌파(유급전임자 확보)를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역지부임원 파견을 위해서 '무급전임휴직'이라는 중간단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 '해고·계약해지·장기투쟁 조합원'을 지원하는 기준 도 상향되었습니다. 조합 활동으로 인해 자본의 탄압을 받아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거나 자본에 맞서 오랫동안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신분보장기금·장기투쟁기금의 지급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렸습니다. ♥